

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~ 4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4. 4.
제출자	기창군수

■ 개정이유

- 문화진흥기금 모금이 준조세 폐지 차원에서 2004. 1. 1 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람료를 조정하고,
-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하기 위함.

■ 주요골자

- 박물관을 찾는 관람자가 공휴일에 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관일을 1 1 , , , 개주 월요일로 지정하여 휴관하고자 함(8)

- 문화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관람료를 조정함(11 1)
< > [:]

		550	500	50
		440	400	40
		270	250	20
		220	200	20

-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토록 함(12 7 8)

■ 개정근거

-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근거
⇒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8 2 :
-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 조 () , 1 1 , , ” .

제11 조 1항 “ ” “[1]” . 하고 같은조 제2항 “ 1 ” : “[2]” .

제12 조 중 제7 9 , 7 8 .
7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안내인
8. 86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
제13 조 · 14 조 16 조 중 “ ” “ ” 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 8 () 1 1 , 1 2 그 외의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로 한다.	제 8 () 박물관의 휴관은 월요일, 1 1 , _____.
제12 () () 1.~ () < > < > 7. ()	제12 () () (행과 같음) 1.~ () 7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안내인 8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9. (7)
제13 () <u>진열품</u> 관람자 -----	제13 () <u>관람자</u> -----
제14 () <u>박물관</u> 관람자 -----	제14 () <u>관람자</u> -----
제16 () <u>진열품</u> 관람자 -----	제16 () <u>관람자</u> -----

[1]

1.

	500	400	- : 20 - 64
.	250	200	- : 13 - 19 - :

[2]

()

:	:	
구분 : 원	구분 : 원	
200	200	

()

		:
		:
()		.

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~ 5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4. 4.
제출자	거창군수

■ 개정이유

- 2001년도 문화센터 개관당시 제정하여 운용중인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및 신설하고, 그동안 보완된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를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

■ 주요골자

- 식재개편에 따라 “ ” “ ” (7)
- 문화센터의 사용제한 규정 중 각 종교단체 기념일에 당해 단체의 기념공연에 한 하여는 대관을 허용하도록 함(8)
-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함(9)
- 문화센터 사용시간대를 조정함(10)
- 하절기 냉방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함(10)
- 문화센터 시설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(11 1)
-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함(18)
- 거창군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술가족회원제 운영근거를 마련함(21)

■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 :
-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

를 가산한다.

제18 ㄷ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 () 소장은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 |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전염병 질환자
2. 술에 만취한자
3.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4. 7 | 이하 어린이 동반입장 등 문화센터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21 22 ㄷ를 제22 23 , 21 .

제21 () ① 거창군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센터에서는 예술가족회원제(“ ”) , 회원제를 운용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 , , , 입장료 감면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: () .

② (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7 ()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복지센터소장(" ")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제 8 () 3. 기타 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</p> <p>제 9 () 5.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</p> <p>제 10 () ①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1 . 다만, 10:00 -터 21:00 . 1. : 09:00 - 13:00 2. : 14:00 - 18:00 3. : 19:00 - 23:00 ② 부대설비 중 냉· 방시설은 소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예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. ,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· 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제2 . 방 시설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: 7 15 8 15 !</p>	<p>제 7 () ① ----- 문화센터소장----- ----- -----.</p> <p>제 8 () 3. ,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등, 다만 종교기념일에 당해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기념공연은 허용</p> <p>제 9 () 5.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</p> <p>제 10 () ①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1 , 사용시간의 1/3 이상을 사용한 때에는 1 . , 전시설의 사용 시간은 10:00 20:00 지로 한다. 1. : 09:00 - 13:00 2. : 13:00 - 17:00 3. : 18:00 - 22:00 ② 부대설비 중 냉· 방시설에 대해 다음 각호의 기간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. ,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· 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: 7 15 8 25</p>

까지

2. : 12 1 2
월 28 | 까지

제 11 () ① 제7 :의
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" " | 같으
며, 사용료는 통지서를 받음과 동시에
납부하여야 한다. , 2
일 이상일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
사용료를 2

② 사용자가 제10 1 -의 규정에
의한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
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, 공연
을 위한 무대설치 기간도 사용한 것으
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.

제 18 () 소장은 문화
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
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
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일 까지

2. : 12 1 |부터 다음년
도 2 28 | 까지

제 11 () ① 제7 :의
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" " | 같으
며,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
지 납부하고, 시설을 사용할 때 납부
영수증을 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다만, 2 | 이상일 때에는
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 |에
걸쳐 분납할 수 있다.

② 사용자가 제10 1 -의 규정에
의한 사용시간 중 공연을 위한 무대설
치 기간도 사용시간의 1/3 |상을 사용
한 때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그
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③ 공연 및 상영은 1 3 | 이내로
하고, 초과하였을 때는 별도의 초과
사용료를 가산한다.

제 18 () 소장은 문화
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
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 | 해당
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
을 명할 수 있다.

1. 전염병 질환자
2. 술에 만취한자
3.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
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
4. 7 |
이하 어린이 동반입장 등 문화센터 질
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자

<p>< ></p> <p>제21 ㄹ ()</p> <p>제22 ㄹ ()</p>	<p><u>제 21 ()</u></p> <p><u>① 거창군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센터에서는 예술가족회원제 (" ") · 운용할 수 있으며, 회원제를 운용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회원제운영에 따른 회원의 자격, , , 입장료 감면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22 ㄹ (21)</p> <p>제23 ㄹ (22)</p>

[]

1. (11 1)

구 분		사용료	비 고
공연장	오 전	100,000	-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의 50% 〕 징수함 - 1/3 〕상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을 징수하고, 야간 시간 초과 시에는 당해() (, 무대설치 포함) 20% 〕 가산하여 징수함. - , , 야간으로 구분함 - 1 〕라 함은 오전 〕 〕간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.
	오 후	100,000	
	야 간	120,000	
	1 일	288,000	
야외공연장	오 전	20,000	
	오 후	20,000	
	야 간	30,000	
	1 일	63,000	
대전시설		20,000	
소전시설		9,000	
도 구 실		20,000	
연 습 실		20,000	
분 장 실		20,000	

2. 부대설비 사용료

구 분		사용단위	장 소	사용료	비 고	
부대시설	오케스트라비트	1 〕공연	공연장	20,000	- 연습에 사용되는 각종 부대시설 사용료는 당 해 사용료의 50% 〕 . - 강초 허가한 시간을 1/3 〕상 초과한 경우 기준 액의 100% 〕 추가 징수함. - 영화상영을 위한 빔 프로젝트 사용료는 면제함. ※ 〕, 냉난방 사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함	
	승하강무대	“	“	30,000		
	댄싱플로어	“	“	40,000		
	덧 마 무	작품당100㎡ 〕상	“	20,000		
		작품당100㎡ 〕만	“	10,000		
합 장 대	작품당	“	20,000			
영사시설	환 등 기	“	“	10,000		
	빔프로젝트	“	“	10,000		
냉난방시설	공연장	냉방	1 〕공연	“		70,000
		난방	“	“		70,000
	전시실	냉방	1 〕	전시실	20,000	
		난방	“	“	20,000	
	연습실	냉방	1 〕	연습실	20,000	
		난방	“	“	20,000	

구 분		사용단위	장 소	사용료	비 고	
피아노	대 형	1 공연	공연장	20,000	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별도 부담함	
	소 형	“	“	10,000		
음향시설	음향반사판		“	“	20,000	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료는 면제함
	기본음향 (MIC 2)		“	“	20,000	
	유선MIC 2 초파		1 공연 ()	“	2,000	
	무선MIC		“	“	10,000	
	녹음	디지털	1 공연	“	30,000	
		카세트	“	“	10,000	
의상 및 대· :도구		“	“	취득가액의 5%		
중계방송	TV		“	“	20,000	
	라디오		“	“	10,000	
조명시설	공연장기본조명		“	“	40,000	- :로우권 스포트라이트는 사용자가 별도 인력을 배치 하여야 함
	팔로우권 스포트라이트		“	“	20,000	
	야외공연장		“	“	20,000	
효과시설	드라이아이스기		“	“	20,000	
	포그머신		“	“	10,000	
기 타	선전영화		“	“	10,000	
	영화촬영		“	“	50,000	
	사무실		원대 ()	센터내	3,000 (1)	